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문화예술단체 및 축제 등에 지원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서예, 문학, 사진, 영화, 건축 관련 공연·전시회·기획·연

구·창작활동 사업, 문화소의 지역 및 계층의 문화향유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사업,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원 및 문화학교 운영사업,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시장이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축제 사업,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발굴·육성할 특색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ysi33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문화예술진흥기본계획’을 ‘문화예술진흥계획과 지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서예, 문학, 사진, 영화, 건축 관련 공연·전시회·기획·연구·창작활동 사업
2. 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의 문화향유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 사업
3.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원 및 문화학교 운영 사업
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사업
5. 시장이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축제 사업
6.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발굴·육성할 특색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문화예술진흥기본계획 제12조(계획수립 등)①(생략) ②(생략) ③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 으로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제3장 문화예술진흥계획과 지원 제12조(계획수립 등)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삭 제> <u>제12조의2(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문 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금을 지원할 수 있다.</u> <u>1.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 악, 서예, 문학, 사진, 영화, 건축 관 련 공연·전시회·기획·연구·창작활동 사 업</u> <u>2. 문화소의 지역 및 계층의 문화향 유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 사업</u> <u>3.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 원 및 문화학교 운영 사업</u> <u>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사업</u> <u>5. 시장이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문 화예술 축제 사업</u> <u>6.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 창달을 위 해 발굴·육성할 특색 사업</u>